

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

□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, 중퇴 또는 재학, 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**본교**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 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**분교***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* 예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, 건국대 충주캠퍼스, 한양대 안산캠퍼스
 - *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닌 **이원화캠퍼스**는 **본교(제1캠퍼스)**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대학 판단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다.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 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※ 위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, 해당 법령 등이 우선함